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

▣일 시 : 2018년 10월 19일(금) 15시

▣장 소 : 동작구의회 제1소회의실

동 작 구 의 회

(15시23분 개의)

◇**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의회 의정팀장입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공무국의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시작에 앞서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성명순서에 따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목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극동대학교 교육대학원과 한국청년회의소 연수원의 안홍선 주임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법무법인 다산 오세범 변호사님이십니다.

다음 한국노인생활안전연구회 정상 사무총장님이십니다.

계속해서 동작구의회 최정아 부의장님이십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이십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이십니다.

심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에 따라 의원, 대학교수 등 7인 이하 인원으로 구성하며 위촉기간은 2년입니다.

금일 심사할 내용은 2018년 10월 23일부터 28일까지 4박 6일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국외연수의 가부입니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심사에 앞서 조례에 따라 심사위원 중 위원장님을 호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위원** 부의장님이신 최정아위원 하시면 되죠.

◇**000위원** 제가요?

◇**의정팀장** 동작구의회 부의장이신 최정아위원으로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정아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나가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녕하세요. 위원장으로 호선된 최정아입니다.

동작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미리 배포된 자료를 보면 주민들의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복지, 수자원, 전통시장 등 이런 곳으로 선정되었고요. 이번 연수가 의원들의 견문을 높이고 의정활동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동작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정팀장님 연수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연수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연수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의 배경과 목적입니다.

자료 1쪽입니다.

복지정책이 없지만 사회복지로 유명한 싱가포르의 민간자원을 활용한 복지 현장을 살펴보고 우리 구의 마을사업 등과 연계방안을 고찰하는 한편 자연환경상 물 부족국가일 수밖에 없지만 신홍 수자원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수자원시설을 탐방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이 활성화된 말레이시아의 현장을 확인하여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금번 국외연수단은 강한옥 의장 외 13명의 의원과 4명의 수행공무원을 포함하여 총 1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3쪽 주요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차인 23일에는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현지시간으로 오후 8시경에 싱가포르에 도착하고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2일차에는 오전에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고 오후에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활성화된 시민단체인 싱가포르 장애인협회를 만난 후 하수 재활용시설인 뉴워터팩트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3일차인 25일 오전에는 어린이보호시설과 싱가포르 도시개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도시개발청을 방문할 예정이며, 오후에 항공편을 이용하여 말레이시아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4일차, 5일차는 말레이시아 전통재래시장 네 곳을 방문하여 말레이시아 재래시장의 활성화 동력을 확인하고, 27일 밤 비행기를 타고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여행의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원 국외여비를 산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수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00위원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세 분은 보니까 여행자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당사자가 당사자를 심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개의에는 인정되는데 표결하거나 의결할 때 그때는 빠지는 이렇게 되는 것이 법체계인데 같이 여기에 들어와 계셔서 그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00위원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조례가 그렇게 돼 있으면 조례에 따르면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 조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설치 및 운영에는 “심사하기 위해 의장은 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 “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7인 이내로 의장이 위촉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호선”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설치 운영에 해당하는 제4조에는 의원이 들어갈 수 있어요.

◇000위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의원이 들어가서 다른 의원이 갈

때 그 심의는 할 수 있는데 내가 가는 걸 심의하는 건 법 일반원칙에 제척 기피사유가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보면 뒤에, ‘과반수 출석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제3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의석 정족수에 들어갑니다. 의석 정족수에는 들어가는데 의결할 때는 빠지는 걸로

◇**위원장** 제척사유가 돼야 되지 않느냐

◇**000위원**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법 이론이기 때문에 빠진 것 같은데 이때 의원은 다른 의원을 심의할 때

◇**000위원** 그렇다면 이번을 기회로 해서 조항을 넣는 것이 다음에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조례를 고치는 과정이 있으면 거기다가 그런 문구를 적어놓고 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하더라도

◇**의정팀장** 이번에는 전 의원님들이 다 가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심사위원회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하시면 해당 의원들이 빠지셔야 겠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체 의원이 가기 때문에 조례의 구성요건상 의원, 대학교수 등 7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000위원** 회의진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000위원** 결정할 때?

◇**위원장** 의사결정 시 당사자기 때문에 빠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신 거죠?

◇**000위원**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 전체 자체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의원으로는 다 있는데 당사자일 때 그때는 빠진다는 거예요. 일곱 분 중에서 여섯 분이 오면 일반 과반수 출석은 된 겁니다. 그래서 회의는 하는데 여기에 3분의2 의결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당사자 세 분은 빠지고 나머지 세 분 중에서 두 명 이상이 찬성이 되면 의결되는 겁니다. 그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000위원님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다 대상자기 때문에

◇**000위원** 다른 건 괜찮은데 이것에 대해 할 때는 임시로 위원장님 대신에 세 분 중에서

◇**위원장** 부위원장님을 호선하든지

◇**000위원** 임시로, 그렇죠.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자체는 계속 고정돼 있지만 이 회의할 때는 다른 분이 대응을 해서 의장대행을 진행하고, 세 분 중에서 두 분이 찬성해야 의결이 되는 겁니다. 그게 법의 일반이론입니다.

◇**의정팀장** 위원장님, 000위원님 말씀대로 부위원장님 호선을

◇**위원장** 부위원장을 호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00위원** 저는 출석위원의 3분의 2찬성인데 제척사유가 있다고 세 분을 빼버리고 세 분만 하시면 어찌됐든 과반수 출석이 안 되잖아요. 참여는 했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 법률상으로는 온 사람 여섯 명의 3분의2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000위원** 그게 의사정족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회의를 진행하다가 어느 정

도까지 진행되고 그다음에 어떤 안건이 올라와서 심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가 버리면 의사정족수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00위원님 얘기하신 게 의사정족수에 미달하기 때문에 만약에 통과할 때는 안 된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할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는 참석하고 만약에 그런 규정을 조례에다 나중에 넣어서, 아니면 인원수를 완전히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000위원 잠깐만요. 이게 회의에는 전혀 지장 없는 게 의사정족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7인으로 돼있는데 6인이기 때문에 과반수가 넘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의결정족수, 의결정족수가 될 때 당사자가 되면 그 사람들은 빠지고 그 경우에는 의결정족수에서 빠지는 겁니다. 세 분이 다 빠지면 의결할 때는 나머지 세 분이 의결하고 그중의 3분의2가 되는 겁니다. 두 분 이상 찬성하면 돼서 회의하는 데 전혀 지장은 없는데 절차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000위원 아니 그런데 결정할 때는 의결정족수는 인원수가 3분의2가 조성이 돼야 결정이 납니다.

◇000범위원 그러니까요.

◇000위원 결국은 3분의2란 뭐냐면 처음에 결성된 인원수의 3분의 2가 왔기 때문에 그 인원이 있어야 되는 거지 좌석을 떠난다면 그거는 회의진행법에 어긋나죠. 그렇잖아요.

◇000위원 일반적으로 회의할 때는 관계가 없는데 동작구의회에서 하면 법적으로

◇000선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전부 다 의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의원이 결정할 때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있어야지 그 사람이 투표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는 개인의 마음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통과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의결안이 의사정족수에 맞아야 되잖아요.

◇000위원 예.

◇000위원 그러니까 세 분이 빠져 나갔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투표할 때 다 있어야 되지만 그거는 본인에 의해서 반대한다든지 만다든지 투표를 안 하든지 그거는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000위원 현재 조례안에서는 저희 의원, 옳으신 말씀인데 당사자들이 가면서 당사자들이 심사하냐, 무슨 내용인지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현재 조례안에서는 일곱 분 중에서 여섯 분이 왔는데 여섯 분 중에 3분의2 찬성이 돼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 제척사유 내용도 없는데 제척사유가 되니 세 분이서 하고 두 명만 찬성한다는 논리는 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하려면 조례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저희가 세 명이 와 있는데 너희들이 말하자면 당사자인데 투표할 권한이 있냐 그러면 조례를 바꿨어야 돼요.

◇000위원 맞아요.

◇000위원 세 명이 빠지든가 아니면 두 분만 들어가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투표를 참여 안 하고 세 분이서 3분의2 충족한다 그렇게 안

보거든요.

◇000위원 고치려면 제4조에다가 사실은 의원을 빼야 됩니다. 제 생각인데

◇000위원 조례를 나중에 개정할 때

◇000위원 제 얘기입니다. 대상자가 가는데 여기 와서 시시비비 콩나라 감나라 할 수 없는 거예요. 000위원님이 맞는 얘기예요. 다음에 조례할 때 전체가 갈 때는 의원이 빠져야 되는 게 000인데

◇000위원 다른 의원 할 때는 이 내용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의원들이기 때문에 심의하는 건 맞는데 당사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조례 제6조제3항에 출석위원 이렇게 돼서 000위원님이 우리 출석위원 6명 중 3분의2가 돼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인데 사실 정확하게 하면 여기 단서가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심의대상자일 경우에는 여기서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을 출석위원으로 한다. 출석위원 수에서 의결할 때는 제외한다.

◇000위원 앞으로 조례개정에 보완할 이 조례상에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되지 않냐 말씀입니다.

◇000위원 저는 다른 생각인데요, 000위원님 말씀이 맞다 생각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들어 오셔서 당사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표결을 했어요. 어찌됐든 결정이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픈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조례안에 없지만 회의에 참석하셨던 위원 분들이 결정했을 때는 문제가 덜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는 000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지 향후에 조례가 어떻게 고쳐지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000위원 말씀으로 가는 것이 맞을 수 있다.

◇000위원 조례의 규정한 내용에는 아니라는 거죠. 6명이 참여해야 한다는 거죠. 조례의 방향을 바꿔 간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조례안에서 우리 회의를 하려면 6명이 다 의결권이 있다고 보는 거죠.

◇위원장 출석위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회의를 하거나 하면 해당위원이나 거기에 포함이 되면 제척사유가 되거든요. 의결할 때는 제외를 하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없어도 저는 000위원님 생각이 오히려 공무국외여행 했을 때 조금 더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의견도 개진됐다고 볼 수 있고, 동작구의회 홈페이지에 다 올려요. 회의록도 마찬가지로 올리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가 공무국외여행을 가면서 의결정족수는 맞지만 마지막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000위원 실정법이면 이 안에 있는 걸 원칙으로 삼아서 해야지 앞을 봐서는 안 되거든요. 이거대로 진행하고 잘못됐으면 다음에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다른 것도 걸릴 수 있어요

◇000위원 조례범위 안에서

◇위원장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000위원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데 현재 회의는 이 조례에 맞게 회의를 하자면 6명이 다 의결권이 있다는 거죠.

◇위원장 조례상에는 의결권이 있어요. 해석을 하면 의결은 할 수 있는데 유추해서 해석을 하자면 안 맞지 않느냐

◇000위원 일반적으로 배제하지 않습니까? 당사자들이 문제 심각하거든요. 조례가 먼저냐 그 부분일 수 있는데, 저는 조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의 의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의구성은 하지만 회의참석해서 논의는 하지만 최종 의결에 있어서는 투명하게 했구나 하는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만 원칙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000위원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니고요. 만약에 누구라도, 특히 정당이라든가 정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례가 우선이 아니라 법이 아니라 상위법도 있고 관습법과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만 보면 안 되고요, 앞뒤 체계를 봐야 되거든요. 항상 자기를 심의할 수 있다는 거는 법의 원칙입니다. 각종 위원회라든가 징계위원회 이런 거 다 할 때 당사자가 걸리면 의결할 때는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법의 일반원칙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대로 하더라도 이 회의는 지장 없고 오신 세 분이 굉장히 처음부터 부정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통과, 지금 제가 선부르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부정적인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있을 문제를 명확하게 해야 문제가 없지 나중에 문제됐을 때는, 특히 저같이 법률가로서는 이 얘기를 남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면책이 되거든요.

◇위원장 이번에 가지지 않는 의원이 계시면 의결을 해도 돼요. 그거는 여기서 결정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000위원 저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교수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 셋이 빠지고 세 분이서 둘이 찬성해서 결정이 되면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느냐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참석인원이 6명인데 3분의2가 결정해서 하는 조례상에 3분의2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거를 법적으로 요건이 갖춰졌느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우리가 예측하고 상식적인 걸 얘기하는 게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세 분이 해서 결정하는 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항인가 절차상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000위원 그러면 원칙상으로 참석하실 분은 오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들어오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 네 분이 참석하시면 의원

◇000위원 조례에

◇000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지 않는 의원들이 오셔야죠. 그 문제도 심각해요.

◇000위원 팀장님 조례가 서울시 25개 구에 다 있잖아요.

◇의정팀장 예.

◇000위원 세 분씩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의정팀장 수는 몇 분이라고 안 되어 있어요.

◇000위원 참여하게 돼 있죠?

◇의정팀장 예.

◇000위원 의사정족수가 되고요.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죠. 원칙적으로는 여섯 분이면 의사정족수 됐고 의결정족수 되는데 당사자하고 이해관계라든가 문제를 할 때는 제척사유가 되고 세 분이 빠져버리고 의결정족수에도 빠지는 거예요.

◇000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평가를 나가면 평가에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저하고 관련 있는 기관 소속이라면 평가가 들어가긴 가는데 나중에 점수를 매겨서 최종 할 때는 제외를 하거든요. 그렇게 합니다.

◇000위원 팀장님 의견 있으면 주세요.

◇의정팀장 000위원님 말씀처럼 안 가는 의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하면 어떠냐 하시는데 안 가는 의원 매번 바뀝니다.

◇000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런 거죠.

◇의정팀장 국외여행심의회가 전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하지.

◇000위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다음에 다른 분들이 가실 때 당연히 의원으로 되신 의원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가시는 분 네 분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000위원 네 명?

◇000위원 세 분.

◇000위원 우리 셋이에요.

◇000위원 이분이라도 오셨으면 더 편하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상관 없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가는 거 지금 현재가 문제죠.

◇위원장 5분간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회 때 논의한 것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관 대 기관 방문으로 동작구의회 의원 개인이 아니고 동작구의회가 싱가포르에 있는 기관 방문과 말레이시아에 있는 기관 방문으로 보기 때문에 의원 개별 의견이라고 판단하여 여기에 계시는 의원 모두가 결정의사권이 있는 걸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000위원 의장!

◇위원장 000위원님

◇000위원 문구를 통일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이라고 돼 있는데 심의안건에는 2018도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라고 돼 있어요. 연수가 맞는지 여행이 맞는지 문구 수정한 다음에 시작하죠.

◇**위원장** 의정팀장님 공무국외 연수가 맞을 것 같은데요.

자료상 정리가 잘못된 것 같아서요. 공무국외연수로 통일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위원** 의장, 유인물 4쪽 봐 주시면 그 외 경비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의장과 부의장의 숙박비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식비는 그냥 의원들하고 다르다는 건 다른 밥을 먹는다는 겁니까?

◇**위원장** 팀장님 사유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의정팀장** 여비조례 규정에 의해서 산출한 겁니다.

◇**000위원** 숙박비는 인정해요. 먹는 것을 어떻게 해서 이분들한테 지급해서 따로 줄 거예요? 식비는 다음부터라도 똑같이 해야 되지.

◇**위원장** 실제적으로는 똑같아요. 예산상 편성기준상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의정팀장** 기관장끼리 식사할 경우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의원들이 함께 식사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지만

◇**000위원** 기타 사항에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타 사항에 적어 놓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똑같이 먹을 텐데 이거는 문제가 된다고

◇**위원장** 비고 내용난에 기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000위원**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가시네요. 엄청 피곤하시겠어요. 24일부터 시작해서 4박 6일인데 하루에 많은 데를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이 철인이 아니실 텐데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가서서 많은 것 보면 의정활동 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은데 피곤하다보면 놓치기 쉬운 것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정해진 것들을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가시게 된다면 너무 타이트하게 하시는 것보다 심도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내용은 좋아요.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나무랄 것이 없는데 시간상으로 본다면 이동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 반영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00위원** 저도 000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우려가 됩니다. 더 좋은 스케줄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 A하고 B를 구분해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한 곳으로 한다는 거는 그렇지 않겠어요? 두 곳을 넣어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에는 한 곳만 해 놓고 결정을 하라고 하면 우리가 할 일이 없잖아요. 다음에는 두 곳 견적을 내서 여기서 하는 거는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00위원** 의원총회에서 브리핑을 했어요.

타이트하게 열심히 다니게 만들어 온 곳을 선택해서 간 보람을 찾자는 의미에서 해놓은 거거든요. 사실은 많아요. 너무 시달리니까 가는 김에 열심히 보고 오자, 공부하고 오자 이거거든요. 사전 의원총회할 때 브리핑을 봤습니다.

◇000위원 그렇게 하셨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000위원 다 할 수 있으면 진짜 좋은데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식이 되면 안 될 것 같고 끝나고 와서 보고회를 해서 내실 있게 그 부분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의장실에서도 얘기했지만 보고회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0위원 혹시 방문하고자 하는 기관들하고 동작구하고 사전교류는 없으신 거죠?

◇위원장 사전교류 대상이 되는 데도 있고요. 그게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관광전통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어떻게 준비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국가마다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무슨 장애협회라고 하면 성격이 의회하고는 안 맞잖아요. 저희가 요구를 해도 그쪽에서 거절할 때도 있고요. 최대한 하기는 하는데 갈 때마다 전부다 MOU를 맺거나 하는 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000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내실있는 데를 하려면 우리가 알고 가는 것과 그냥 맡겨놓고 가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고 가시는지 하는 것 때문에 여쭙본 거예요.

◇위원장 그전에 저희가 주제를 먼저 줬어요. 전통시장이 계속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관련해서 기관방문을 하겠다는 것 하나이고 또 하나는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먼저 줬어요. 그다음에 도시개발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같이 연관을 쳐서 싱가포르가 국가면적이 작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쾌적하게 관리하고 있어서 먼저 주제를 주고 그 기관이 컨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심의를 했어요.

◇000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000위원 일비하고 준비금 차이가 뭔가요? 회계상에 공식명칭이 준비금이라는 게 있습니까?

◇의정팀장 있습니다.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무국외연수에 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000위원 동의안을 받아야죠.

◇위원장 공무국외연수 일정은 10월 23일부터 10월28일까지, 방문 국가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기관방문은 노인복지시설, 하수재이용시설, 도시개발청, 말레이시아는 전통재래시장 센트럴마켓하고 청과물유통시장 공무국외연수를 가는데 연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000위원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여행일정표 3쪽은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대로 알차게 축소하든지 변경할 수

있게끔 해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행일정표 중 공식방문 일정을 일부 수정해서 내실 있는 기관방문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데 동의하셨고 재청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동작구의회 공무국외연수에 대해서 내신 동의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국외연수에 대하여 장시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고 의원들도 책임감 있게 다녀오는 것으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최 정 아 신 희 근 전 갑 봉 안 홍 선 오 세 범
정 상

◇**출석공무원**

의 정 팀 장 임 대 섭